

법령 I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‘비상사태’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말한다.
- ② ‘과학기술자’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③ ‘기본지침’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작성하는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.
- ④ ‘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’이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

문 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담배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물적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비상대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- ④ 비상대비자원 중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지정한다.

문 3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- ② 집행계획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국무총리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- ③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시·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- ④ 실시계획은 시·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
문 4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받은 인력자원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의 양성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-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문 5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.
-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업체의 장에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,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문 6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주무부장관이 정부비축 물자에 대하여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·점검할 수 있으며, 확인·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- ④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품목·규격·수량·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